

[붙임 2]

확인서(예시)				
제공기관명	사업명			
사업명				
제공기관 주소				
사업주관 (시도, 시군구)				
점검기간	부터 . . . 까지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사항(필요시 파일 또는 별도 자료 붙임.)				
○ 제목 : 제공인력 자격기준 위반				
(규정)				
- 아동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55호(2012.5.29.)에서 규정한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,				
- 심리, 상담, 치료학(언어, 음악, 미술) 등 아동·청소년 발달 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의 경우에는 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				
※ 근거 : 법 제00조 제00항, 지침 00쪽 등 기재				
(위반)				
- 제공인력 000은 동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, '12년 00월~' 13년00월 까지 이용자000등 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, 정부지원금 000원을 결제하여, 위 자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				
※ 동 기간중 제공인력000는 00대학교 00학과 0학년 재학 중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임				
〈자격기준 미 충족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현황〉				
이용월	제공인력	이용자	결제금액	결제일자
합계				
※ 분량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				
[불.임] 제공기록지 사본				
.....<작성 요령>				
○ (확인서 작성) 추후 환수, 행정처분, 처벌 시 근거 자료가 되는 만큼 위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고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확보				
- 6하 원칙에 의거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문구 등으로 본질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도록 함				
- 불법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				
- 점검대상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처분 시 근거 제공				
- 해당 기관장 날인(또는, 기관장에 준하는 자)				
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합니다. 2016. . .				
수검자 소속:	직급	성명	(서명)	
점검자 소속: ○○구	직급	성명	(서명)	
점검자 소속: 서울시지원단	직급	성명	(서명)	
점검자 소속: 서울특별시	직급	성명	(서명)	

※ 수검자 서명은 제공기관 대표가 하나, 대표자 부재 등 확인이 어려울 경우 차 상위자가 서명

※ 처분이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제시